

피해어업인단체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7일
피해어업인 단체	단체 명칭		구성원의 수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전화번호:)		
대표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	

「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대표자

(서명 또는 날인)

해양수산부장관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. 구성원 명부 3. 운영규정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